

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
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
(기획경제국 재무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56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0. 10.

2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은

총 4건으로 매입 및 신축 1건, 신축 1건, 별도 증축 1건, 매입 1건 임.

[매입 및 신축 등 재산 총괄표]

(단위 : m²)

연번	사업명	소재지	토지		건물		비고
			필지	면적	동	면적	
합계			1	1,449.6	4	7,361.65	
1	금천교육복합센터 건립	독산1동 1007-2	1	1,449.6			○ 매입
					1	2,985.28 (연면적)	○ 신축 지하1층 ~ 지상3층
2	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	시흥5동 832-14	-	-	1	2,196.4 (연면적)	○ 신축 지하2층 ~ 지상4층
3	박미빛물펌프장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	시흥3동 981	-	-	1	2,048 (연면적)	○ 별도 건축(증축) 지상1층 ~ 지상4층
4	금천G밸리어린이집 매입	독산1동 291-1 (115호)	-	-	1	131.97	○ 매입

[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]

(단위 : m² / 백만원)

연 번	구분	재 산 표 시			추 정 가 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비 고 (소관부서)
		지목	소 재 지	면적				
1	금천교육 복합센터 건립	대	독산동 1007-2	1,449.6	27,894	2023	금천교육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	교육지원과
		건물		2,985.28				
2	금천문화 거점공간 조성	건물	시흥동 832-14	2,196.4	8,540	2024	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건물 신축	문화체육과
3	박미빛물 품프장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	건물	시흥동 981	2,048	13,541	2026	박미빛물품프장 상부공간에 소규모 체육센터 증축	문화체육과
4	금천G밸리 어린이집 매입	건물	독산동 291-1	131.97	1,455	2023	직장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위한 어린이집 매입	가족정책과

① (매입 및 신축) 금천교육복합센터 건립 - 교육지원과

가. 목 적 : 유아 및 청소년에게 질 높은 돌봄·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보육 인프라 조성

나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2. 1. ~ 2025. 11.
- 위 치 : 독산1동 1007-2
- 대지면적 : 1,449.6 m^2
- 취득사유 : 토지(매입) / 건물(신축)
- 건립규모 : 연면적 2,985.28 m^2 (지하1층~지상3층)
- 주요시설 : 금천국제외국어센터, 금천진로진학센터, 유아종합 지원센터 등
- 소요예산 : 27,894백만원(부지매입비 22,000, 설계공사비 및 부대비용 5,894)

재원별	총사업비	연차별 소요재원(백만원)			비 고
		2023년	2024년	2024년 이후	
계	27,894	22,343	5,551	-	
구비	27,894	22,343	5,551	-	

다. 향후 추진일정

- 2023. 1월 : 토지매입
- 2023. 4월 :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발주
- 2024. 4월 : 건축공사 발주 및 입찰
- 2024. 7월 : 건축공사 착공
- 2025. 8월 : 준공 및 개관

□ 위치도



□ 현황사진



② (신축)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- 문화체육과

가. 목 적 : 舊 시흥5동 주민센터의 청사부지를 금천문화재단의 독립적인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인 금천 문화거점 공간을 신축하고자 함

나.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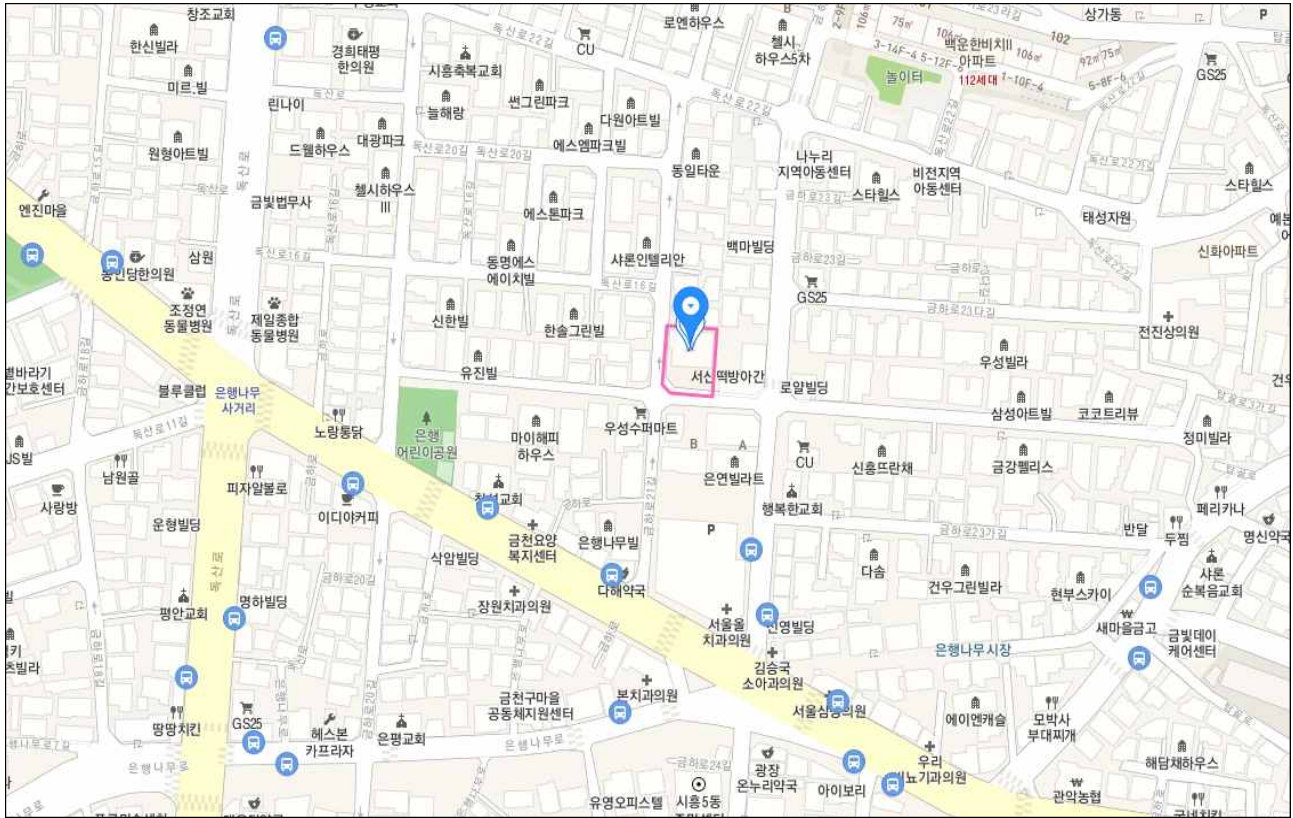
- 사업기간 : 2022. 1. ~ 2025. 11.
- 위 치 : 금천구 시흥5동 832-14
- 건립규모 : 2,196.4㎡(연면적), 지하2층~지상4층
- 주요시설 : 금천문화재단 사무실, 개방형 복합문화공간, 문화프로그램실 등
- 소요예산 : 8,540백만원

재원별	총사업비	연차별 소요자원(백만원)			비 고
		2022년	2023년	2024년 이후	
계	8,540	626	62	7,852	
구비	8,540	626	62	7,852	

다. 향후 추진일정

- 2023. 1월 :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발주
- 2023. 4월 :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실시
- 2024. 1월 : 건축공사 발주 및 입찰
- 2024. 4월 : 건축공사 착공
- 2025. 11월 : 준공 및 개관

□ 위치도



□ 현황사진



③ (별동 증축) 박미빛물펌프장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- 문화체육과

가. 목 적 : 박미빛물펌프장 집수정 복개 상부공간에 주민의 여가 활동을 위한 소규모 체육센터를 별동으로 증축하고자 함.

나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0. 9. ~ 2026. 6.
- 위 치 : 시흥3동 981
- 취득사유 : 별동 증축 취득
- 취득면적 : 별동 2,048 m^2 (연면적)
- 건립규모 : 지상1층 ~ 4층
- 주요시설 : 공유주방, 다목적룸, 체력인증센터, 체육관, 야외운동장
- 소요예산 : 13,541백만원(시비 2,000 / 구비 11,541)

재원별	총사업비	연차별 소요재원(백만원)			비 고
		2022년	2023년	2024년 이후	
계	13,541	607	290	12,644	
시 비	2,000	-	-	2,000	
구 비	11,541	607	290	10,644	

다. 추진일정

- 2022. 12월 : 공공건축사전검토 및 심의
- 2023. 1월 : 설계공모
- 2023. 1월 : 도시계획시설결정
- 2023. 5월 : 실시설계
- 2024. 1월 : 공사 착공
- 2026. 7월 : 개관(시설운영 계획수립·운영)

위치도



현황사진



4 (매입) 금천G밸리 어린이집 매입 - 가족정책과

가. 목 적 : 독산1동의 직장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나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3. 1. ~ 2023. 3.
- 위 치 : 독산동 291-1, 현대지식산업센터 115호
- 주요시설 : 보육실, 원장실, 조리실, 유희실, 교사실, 자료실 등
- 소요예산 : 1,455백만원(매입비 1,450백만원, 감정평가 및 등기 수수료 5백만원 등)

재원별	총사업비	연차별 소요재원(백만원)			비 고
		2022년	2023년	2024년	
계	1,455	-	1,455	-	
구 비	1,455	-	1,455	-	

다. 추진일정

- 2023. 1월 : 건물매입(115호)
- 2023. 2월 :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및 위탁체 선정
- 2023. 3월 : 리모델링 공사
- 2024. 4월 : 국공립어린이집 개원

위치도



현황사진



4. 관계법령

가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

나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

다.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

5. 검토의견

-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- 이 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이며, 금천교육복합센터 매입 및 신축 1건,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신축 1건, 박미빛물품프장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별도 증축 1건, 금천G밸리 어린이집 115호 매입 1건임.
- 4건 모두 필요성은 인정되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산심의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립 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계 법령 1부. 끝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[시행 2022. 6. 29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<신설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 <신설 2015. 1. 20., 2021. 1. 12., 2021. 4. 20.>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<개정 2015. 1. 20., 2021. 1. 12., 2021. 4. 20.>

[전문개정 2008. 12. 26.]

[제목개정 2021. 4. 20.]

[제10조에서 이동 <2021. 4. 20.>]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[시행 2022. 6. 29.] [대통령령 제32733호, 2022. 6. 28., 타법개정]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 <개정 2022. 4. 20.>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
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. <개정 2022. 4. 20.>

1. 사업목적 및 용도

2. 사업기간

3. 소요예산

4. 사업규모

5. 기준가격 명세

6. 계약방법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

[시행 2022. 8. 15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49호, 2022. 8. 15., 일부개정]

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,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개정 2013.12.31., 2015.10.8.>

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(변경계획을 포함한다)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. 다만,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31>